

■ **케도운송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4. 11. 12.>**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케도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의 금액
가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1호	150
나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2호	150

다.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3호	100
라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4호	100
마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5호	200
바.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6호	200
사.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제1항	
1) 1차 위반 시		100
2) 2차 위반 시		200
3) 3차 이상 위반 시		300
아.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7호	5